

조경소재 표준화 및 가격적정화 작업회고



김 극 곤/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우 리나라의 조경용수 가격합리화 및 규격통일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4여년전의 일이다.

이무렵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각각 다른 가격과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통일성이 없었으며, 이로인한 발주업무나 사후 감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경분야의 육성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부서, 그리고 이 당시 주요발주기관이었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10여개의 부처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작업은 조경용수를 보는 시각의 정립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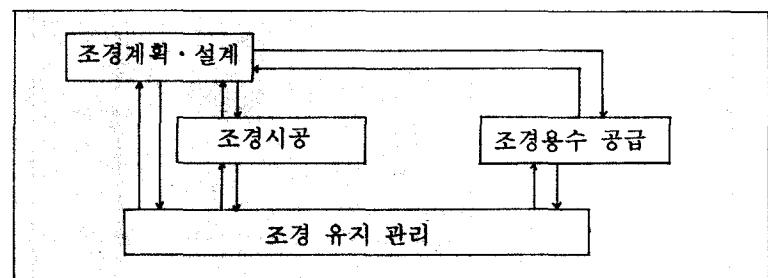


그림1>

조경용수 공급과 조경계획·설계, 시공, 유지관리와의 상호 관련성

기억한다. 즉, 작업의 전제로, 조경용수는 조경소재중 soft landscape의 창출을 위한 유기소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림1〉과

같이 조경계획 설계, 조경시공 그리고 조경 유지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 작업팀 서로의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조경용수는 계획이나 설계작품의 질, 혹은 시공 후의 조경공간의 질에 영향을 주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경양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창조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경용수의 수요 및 공급체계의 합리화가 단기적인 면에서는 물론, 중·장기적인 면에서 조경분야의 육성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먼저 그 당시 주로 쓰여지고 있던 조경용수의 종류를 파악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기관에서 마련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

조경용수는 유휴지를 이용하여 유연하게
얻은 재화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수급 계획의 관점에서 집약재배의
토대위에서 단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는 제 값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조경용
수급계획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조경용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가격면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결과, 수종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생태적인 관점은 물론, 조경양식
의 관점에서 새로운 수종을 포
함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리
하여 수종의 수를 고찰한 후,
수종별 규격을 검토했다. 우리나라의
규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당시 적용되고 있던 규격체계를
이용, 수형 등을 고려하여 규격
표시방법을 조정하고 이를 조경
용수 가격 합리화작업에 이용하
였다.

조경용수 가격은 생산비와 유통비용에 의거 산출하는 것, 즉
원가분석방법을 원칙으로 하였
지만, 조경용수의 수요와 공급도
감안하였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
은 수종은 원가분석방법에 의거
산출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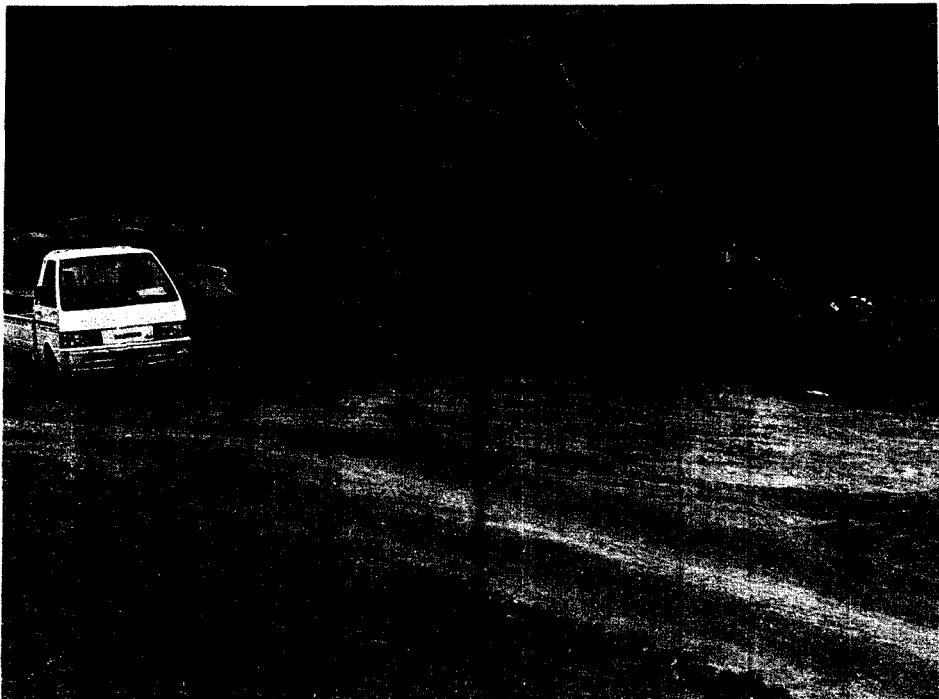
이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조경
용수 재배와 관련된 특수한 상
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
이 있었다. 즉, 그 당시 많은 조
경용수는 유휴지나 한계토지
(marginal land)에서 자라고 있
었으며, 재배했다가 보다는 커다
란 투자없이 자연성장한 것이었
다. 이와 같은 나무들은 그 종
류에 있어서는 재한되었지만 수
량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에 달
했으며, 마치 하나의 natural ca
pital과 같이 팔리게되면 받게되
는 가격전부가 수익으로 인식되
어 조경용수 유통에 혼란을 주
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하여 일부 수종의 경우
에는 집약재배시 들어가는 생산
비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유통되

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조경용수 가격 합리화 작업반
에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경소재로서의 조경용수
의 중요성을 감안, 조경분야의
중·장기적 육성이라는 관점에
서 가격의 합리성을 판단해 보
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었다. 즉, “과거에 재배해
놓은 나무들이 현재 이용되지만,
앞으로의 재배형태와 바람직한
수종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며,
조경용수의 생산에는 상당한 시
간이 걸림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계획재배를 유도한다”는 관점에
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재의 다양화를 기
하고 적정규격의 소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

조경용수 가격 합리화
및 규격 통일화의
실제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전의 일이다



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조경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규격에 맞는 소재의 빈곤으로 우리나라 조경이 획일화되어가는 한편, 특정수종은 남아돌아 유통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현실은 수요창출의 미흡과 이에따른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당시 최저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새로운 수종에 대한 집약재배의 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소재빈곤은 설계의 제약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조경용수의 다양한 수요를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경용수는

많은 경우에 하나의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특수상황, 특히 수종별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시장기능에 맡길 수 만은 없으며, 앞을 내다보는 가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취지와 방법을 이용하고, 그 효과를 전망하면서 「조경소재 표준화 및 가격 적정화 방안」이라는 회의록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본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숫자 자체는 표본조사 범위 및 방법 등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없지 않지만, 조경용수의 생산이나 공급체계가 아직도 적극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숫자

속에 들어 있는 취지와 정신은 앞으로도 계승되어 이 분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본다.

조경용수는 유휴지를 이용하여 우연하게 얻은 재화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수급계획의 관점에서 집약재배의 토대위에서 단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는 제 값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조경용수 수급계획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조경용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가격면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